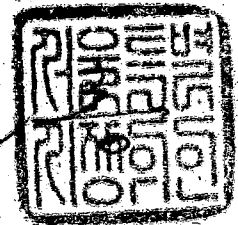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예판규칙중개정령

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이



시장

199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하여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급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감경을 제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규칙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 시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급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감경을 제한 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비위행위 당시 중앙행정 기관인 청장 (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의 표창이 있는 6급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되어 징계요구된 경우 그 표창으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 감경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공무원징계양정통에관한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물 대비표, 별첨.

시장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7조제1항 본문단서중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항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로 하고, 동항 제2호중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약사 및 간호원(지방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 별표2의4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약사와 별표2의5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원을 제외한다)과"를 "비위 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와"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장

[별지서식]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 재

(2) 혐의당시

나. 직 급

다. 성 명 (한 글) (한 자)

2. 제7조제1항본문단서 해당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수수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공금의 횡령·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다. 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3. 제7조 해당 상벌유무 및 감경비위 여부

가. 제7조제1항 해당 공적 및 징계유무

공 적 사 항			징계사항[불문(경고)조치포함]		
포상일자	포상의종류	시 행 처	일 자	종 류	발 령 처

나. 제7조제2항 감경비위 여부 : (해당됨, 해당없음)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 위) (관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④(생략)</p> <p><u>(신설)</u></p>		<p>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④(현행과 같음)</p> <p><u>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①<u>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②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u></p>		<p>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u>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u></p>	<p>주 시 정</p>	

현행	개정안
<p><u>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제7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u>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항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징화 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u></p>	<p><u>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u></p> <p>2. <u>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u></p> <p>3. <u>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u></p> <p>제7조(징계의 감경)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u> _____ _____ _____</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정부표찰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찰을 받은 공직, 다만, <u>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약사 및 간호원(지방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의임용통에관한규정 별표2의4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약사와 별표2의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원을 제외한다)과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직할시장, 도지사이상의 표찰을 받은 공직</u></p> <p>3 - 4 (생략)</p> <p>제8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p> <p>①~② (생략)</p> <p><u>(신설)</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u> ----- ----- ----- ----- -----</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8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u>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u></p>